《증보문헌비고》(선거고)의 천용에 실린 관리추천등용과 관련한 자료에 대한 리해

리 명 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과거에는 인민을 억압하는 소수 통치배들이 인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우로부터 강제로 정권을 만들었기때문에 그것은 항상 반인민적이며 관료적인 정권이였습니다.》(《김일성전집》 제4권 375폐지)

《증보문헌비고》는 우리 나라 민족고전의 대표적문헌의 하나로서 여기에는 지난 시기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외교, 지리 등 각 부문별자료들이 매개 고에 따라 력사적으로, 종합적으로 집대성되여있다.

《선거고》는《증보문헌비고》 16개 고가운데서 13번째 고에 해당되며《증보문헌비고》 184 권부터 201권까지 전 18권으로 이루어져있다.

《선거고》에는 과제, 전주, 증직, 천용, 음서, 고과 등으로 나뉘여 중세 우리 나라의 과 거제도, 관리후보자선발등록, 관리가 죽은 뒤의 벼슬추증, 인재등용, 조상을 따져보고 벼 슬을 주는것. 업적평가 등에 관한 사실. 자료들이 기록되여있다.

그가운데서 천용항목은 《증보문헌비고》권198(선거고 15)과 《증보문헌비고》권199(선 거고 16)에 천용 1, 2로 나뉘여 수록되여있다.

지난 시기 우리 나라 봉건사회의 관리선발등용제도를 보면 과거를 통하여 선발등용하는 과거제도와 조상에 따라 선발등용하는 음서제도 그리고 《인재》를 추천하여 선발등용하는 천용제도가 있었다.

천용이란 말그대로 《인재》를 관리로 추천등용한다는 뜻이다.

천용은 과거와 음서의 제한성으로부터 국가관리에서 실지로 능력을 발휘할수 있는 《인재》를 관리로 추천등용하기 위하여 실시한 관리선발등용제도이다.

천용은 삼국시기 고구려에서 발생하였다.

고구려시기 발생한 천용은 고려시기에 들어와 제도화되었으며 조선봉건왕조시기까지 계 승되면서 더욱 째여졌다.

《증보문헌비고》(선거고)의 천용항목에 실린 관리추천등용과 관련한 자료의 사료적가치는 천용을 통한 관리추천등용의 면모를 알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무엇보다먼저 추천대상에 대하여 알수 있게 한다.

지난 시기 봉건통치배들은 봉건적통치체계를 강화하고 거기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방향에서 《인재》를 선발하고 등용하였으며 여기에서도 봉건제도 그자체를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지혜와 용맹이 있는가, 재능과 덕망이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데 따라 《인재》를 선발하고 등용하였으며 철저히 신분적테두리안에서 실시하였다. 고구려에서 일부 신분이 낮은 사람이라도 군공이나 그밖의 요인으로 특별히 발탁등용하였던것은 극히 례외적인것이였다.

봉건사회에서의 《쓸모있는 인재》, 《숨은 인재》들이란 바로 일반적으로 근로인민대중

을 봉건적통치와 질서에 순종하도록 설교할수 있는 능력을 가진자들이며 인민들에 대한 억 압과 착취를 강화하고 봉건제도를 유지공고화하는데 이바지할수 있는자들이였다.

봉건통치배들이 천용이라는 관리선발등용제도를 받아들인것은 봉건적통치체계를 확립 하는것과 동시에 봉건국가기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배계급의 대렬을 더욱 튼튼히 꾸리 기 위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한것이였다.

우선 관리들을 추천등용하였다.

《증보문헌비고》(선거고)천용조에 기록된 고구려에서의 관리들에 대한 천용관계자료가 운데서 대표적인것은 다음과 같다.

서천왕 11년(280)에 말갈이 침공해오자 여러 신하들에게 각각 기이한 꾀와 특이한 지 략이 있는《인재》로서 장수로 등용할만 한자를 추천하게 하였는데 모든 신하들이 《임금의 동생 달가가 용맹하고 지략을 가지고있어 장수를 감당할만 합니다.》라고 하여 달가를 장수 로 파견하였고 그가 적들을 크게 격파시키니 그를 안국군으로 책봉하였으며 봉상왕 5년(296) 에 창조리의 의견에 따라 북부 대형 고노자를 신성태수로 삼았다.(《증보문헌비고》 권198 (선 거고) 15 천용 1)

이것은 고구려에서 관리들을 추천등용하였음을 보여주는것으로 된다.

《증보문헌비고》(선거고) 천용조에 기록된 고려에서의 관리들에 대한 천용관계자료가 운데서 대표적인것은 다음과 같다.

원종 4년(1263)에 평장사 리장용, 지문하성사 류경이 글을 올려 리부시랑 김구를 추 천하니 우간의대부로 임명하였으며 경효왕 26년(1300)에 찬성사 안유가 밀직부사 리산, 전 법사 판서 리진을 추천하니 경사교도감사 (經史敎都監使)로 임명하였다. 리제현이 늙은이 로서 서연을 면제해달라고 빌면서 찬성사 안축, 밀직부사 리곡을 추천하여 스스로 자기자 리를 대신해달라고 제의하였다.(《증보문헌비고》권198 (선거고) 15 천용 1)

이것은 고려에서 역시 관리들이 추천대상으로 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증보문헌비고》(선거고) 천용조에 기록된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량반관리들에 대한 천 용관계자료가운데서 대표적인것은 다음과 같다.

세조 7년(1461)에 왕이 도승지 홍응에게 지시하여 문사중에 학술이 있는자들을 택하 여 보고하게 하자 홍응이 내자시사 리파 등 23명을 추천하니 리파 등에게 예문관직을 겸 하게 하였고 중종 11년(1516)에 의정부, 6조, 한성부로 하여금 각각 문무관중에 장수로 될 만 한자들을 추천하게 하였다.(《증보문헌비고》 권198 (선거고) 15 천용 1)

리순신은 무관들가운데서 이름이 그닥 알려지지 않았는데 신묘년(1591)에 류성룡이 재 상으로 있으면서 정읍현감으로 있던 리순신을 추천하니 순차를 뛰여넘어 전라좌수사로 임 명하였다.(《증보문헌비고》권199 (선거고) 16 천용 2)

이렇게 조선봉건왕조시기에도 량반관리들이 천용의 대상으로 되여있었다.

또한 민간에 묻혀있는 량반출신선비들을 추천등용하였다.

고국천왕 13년(191)에 처사 을파소를 국상으로 임명하였는데 그 내용이 《증보문헌비 고》(선거고) 천용조에 기록되여있다.

그에 의하면 왕이 4부에 명령하여 각각 아래에 있는 현명한자들을 추천하라고 명령하 니 4부에서 모두 동부의 안류를 추천하자 안류는 《미천한 저는 용렬하고 어리석어서 진실 로 중대하 나라일에 참여할수 없습니다. 서쪽 압록골 좌물촌에 사는 을파소라는 사람은 성

질이 굳세고 지혜가 깊으나 세상에 쓰이지 못하므로 농사를 지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니 대왕께서 만약 나라를 다스리려고 한다면 이 사람을 쓰지 않으면 안됩니다.》라고 하여 을파소를 국상으로 임명하였으며 안류에게는 현인을 추천한것으로 하여 대사자의 벼슬을 주었다고 한다. 여기서 안류가 자신을 미천하다고 하였지만 그것은 자신을 낮추어서 한말이다. 그가 일정한 벼슬에 있었기때문에 왕이 대사자라는 높은 벼슬을 하사하였던것이다. 또한 을파소가 농사를 지어 생계를 유지하고있다고 하였으나 그는 류리명왕시기 대신이였던 을소의 손자로서 귀족출신이였다.(《삼국사기》 렬전 을파소) 이것은 고구려시기 천용의 대상이 귀족출신의 선비였음을 보여준다.

고려시기 시골에 묻혀있는 선비출신들을 추천등용할데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은것들이 있다.

고려 선효왕 초기 왕이 지시하기를 《재주가 뛰여나고 덕이 후하며 효도가 지극하고 청렴하며 방정한 선비로서 시골의 구석에 은퇴하여 살고있는자가 있으면 해당 관청에서 천거하여 영달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의효왕 12년(1325)에 왕이 지시하기를 《재주가 뛰여나고 덕이 후하며 효도가 지극하고 청렴하며 방정한 선비로서 비천하여 보고되지 않은 자를 해당 관청에서 맡아서 이름을 등록하고 천거하여 올려보내라.》고 하였다.

이것은 고려시기 역시 민간에 묻혀있는 선비들을 추천등용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이 민간에 묻혀있는 선비들이라고 하여 일반백성이라는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증보문헌비고》(선거고) 천용조에는 조선봉건왕조시기 민간에 묻혀있는 량반출신학자들을 등용한데 대한 자료가 많이 실려있다.

세조 7년(1461)에 왕이 모든 도의 관찰사들에게 지시하여 시골마을에 숨어살면서 묻혀있는자들중에 본래 명망이 있는자들을 계수관들로 하여금 천거하게 하였으며 명종 7년 (1552)에 왕이 8도에 지시를 내리여 벼슬하지 않고 민간에 묻혀있는 량반학자들을 추천하라고 하니 성수침, 리희안, 조식, 성제원, 조욱이 행실이나 품행이 뛰여난것으로 하여순서를 뛰여넘어 6품에 등용되여 현감으로 임명되였다.(《증보문헌비고》 권198 (선거고) 15천용 1)

우의 기록을 통하여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이르러 민간에 묻혀있는 선비들이 벼슬에 많이 발탁등용되였음을 알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역시 량반출신의 선비였다.

이처럼 추천된 사람들은 법의 관리를 맡은 관청에서 신분 및 래력에 대한 보증을 한 조 건에서 추천되였다. 다시말하여 일반백성은 아무리 재능과 덕행이 있어도 관리로 추천될수 없었다.

다음으로 관리후보자추천의 담당자에 대하여 알수 있다.

천거의 담당자에 따라 천용제도의 계급적성격이 규제된다. 봉건사회에서 봉건국가기구를 담당관리운영하는 계급은 봉건통치계급이다.

봉건통치계급은 저들의 요구와 리해관계에 따라 관리후보자를 추천등용하였다.

지난날 봉건사회에서는 지배계급파 근로인민대중의 요구와 리해관계의 불일치로 하여 근로인민대중은 봉건관리추천권한을 가질수 없었다.

《증보문헌비고》(선거고) 천용조에 의하면 고구려 봉상왕 5년(296)에 모용외의 변방침입으로 임금이 근심하자 국상 창조리가 고노자를 추천하여 적들을 제압하게 하였고 고려 선

종 3년(1086)에 왕이 조서를 내리여 문무의 상참관 3품이상들이 각각 충직하고 청렴하며 재 주와 덕행이 있는자 1명씩 추천하게 하였으며 신우 원년(1375)에 재상들과 6조, 사헌부, 사 간원에 명령하여 각각 문무를 갖춘《인재》로서 고을원으로 될만 한자를 추천하게 하였다 는 기록이 있다. 이처럼 고구려나 고려시기에도 관리후보추천은 왕의 지시에 따라 여러 신 하들. 봉건관리들이 진행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러나 고구려시기의 자료는 극히 제한적이며 고려시기의 자료도 천용이 활발하였던 조선 봉건왕조시기보다는 많지 못하다. 이로부터 조선봉건왕조시기를 기본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우선 의정부대신들이 관리후보자추천을 위임받아 하였다.

세조 3년(1457)에 의정부에 지시하여 문무관중에 장수를 감당할만 한자 3명을 추천하 게 하였고 성종 21년(1490)에 의정부에 지시하여 친척이나 친구에 구애되지 말고 재주와 덕 이 뛰여난 사람들을 얻을수 있다면 모두 등록, 추천하라고 하였으며 중종 13년(1518)에 정 부로 하여금 《인재》추천을 하게 하여 3공 정광필, 신용개, 안당이 김국성 등 8명을 추천 하였다.(《증보문헌비고》권198 (선거고) 15 천용 1)

또한 비변사의 관리들이 관리후보자추천을 위임받아 하였다.

비변사에서 군사뿐아니라 나라의 정사까지 보게 되자 이전시기 의정부에서 맡아보던 관 리추천권한도 비변사에로 넘어갔다.

또한 6조와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한성부를 비롯한 중앙관청 및 그 소속 관리들이 관리추천을 위임받아 하였다.

문종이 즉위(1450)하여 의정부에 지시를 내려보내면서 《지금 의정부와 리조로 하여금 어질고 재능이 있는 사람을 천거하게 한다 하더라도 변변치 못한 사람은 파면시켜야 한다.》 라고 하였으며 성종 21년(1490)에 의정부, 6조에서 무신들중에 장수의 재주가 있는자들을 가려내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중종 11년(1516)에 의정부와 6조, 한성부로 하여금 각각 문 무관중에 장수로 될만 한 사람을 추천하게 하였으며 명종 원년(1546)에 의정부와 례조에 서 함께 의논하여 청렴결백한 관리 박수량, 김순 등을 선발하여 왕에게 보고하였고 또 이 해에 의정부와 병조에 장수로서의 《인재》를 추천하라고 지시하였다.(《증보문헌비고》 권198 (선거고) 15 천용 1)

이와 같이 6조를 비롯한 중앙관청들이 관리추천에 참가하였으며 6조에서도 리조의 기 본임무는 관리등용에 관한것이였기때문에 리조가 관리추천에 깊이 관여하였다.

이밖에도 《인재》추천에는 5품이상의 관리들이 다 관여하였으며 지방관으로서 감사와 고 을원 그리고 암행어사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증보문헌비고》권198 (선거고) 15 천 용 1)

그것은 보다 강력한 중앙집권적군주국가에 이바지할수 있는 《인재》를 충족시키기 위 해서였다.

이러한 자료들은 우리 나라 봉건사회에서 관리추천, 《인재》추천사업은 봉건통치계급 부류에서 상층에 속하는자들이 하였음을 알수 있다.

다음으로 추천조목과 추천된자들의 등용방법에 관한 문제를 알수 있다.

추천조목과 등용방법에 관한 문제는 과거제도와 함께 천용을 통한 관리선발이 광범하 게 진행되였던 조선봉건왕조시기에 구체화되였다.

추천조목에서는 계기와 인원수, 추천받을수 있는 자격조건, 추천방식, 추천에서의 처

벌조건 등을 론할수 있다.

자료를 보면 추천계기는 해마다 정월이며 추천권한을 가진자는 문무 3품이상관리 및 의정부, 6조의 당상관들과 사헌부, 사간원의 관리들이며 천거인원수는 매 관리가 3명을 초 과하지 못한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리고 문관 3품이상과 무관 2품이상 관리는 고을원과 만호의 직책을 감당할수 있는자를 추천하며 의정부, 6조, 사헌부, 사간원의 관리들은 관찰사와 절도사의 직책을 감당할수 있는자를 추천하며 충훈부에서는 공신의 자손들중에서 고을원의 직책을 감당할만 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추천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있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법제상으로는 이렇게 되여있지만 실제상 시기와 조건에 따라 필요한 여러가지 추천조 목들을 설정하였다.

추천조목에서 기본은 추천받을수 있는 자격조목이다.

세종 5년(1423)에는 왕이 지시하여 문무판들로 하여금 각각 용맹하고 지략이 있으며 남보다 뛰여나서 변방을 지킬수 있는자, 공명정대하고 총명하여 고을원의 직분을 맡길수 있는자, 일에 익숙하고 상세하고 명백하여 복잡한 일을 처리할수 있는자들을 추천하게 하였으며 문종 즉위년(1450)에는 《뜻과 기개가 뛰여나서 나라의 〈인재〉로서의 풍격이 있는자, 지조가 굳고 용감하게 말할수 있어 왕에게 옳지 못한 일이나 잘못하는 일에 대하여 알려줄수 있는자, 용감하고 굳센 힘으로 침략을 막을수 있는자, 횡포하고 세력있는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관청일을 맡아보되 자기 집을 돌보는것과 같이 하는자, 사리를 통달하고일을 처리하는데서 명백하고 민첩하게 하는자》들을 추천, 등용하게 하였다.(《증보문헌비고》 전198 (선거고) 15 천용 1) 선조 27년(1594)에는 5개조목의 추천규정을 만들었다.(《증보문헌비고》 전199 (선거고) 16 천용 2) 효종 2년(1651)에는 3가지 조목으로 만들어 상소를 올리였고 현종 12년(1671)에는 비변사의 당상관들이 각각 《인재》를 추천하는 조목을 10가지로 규제하였고 숙종 5년(1679)에는 비변사에서 관리후보자를 추천하는 조목을 7가지로 규제하였으며 숙종 36년(1710)에 의정부에서 《인재》를 별도로 추천하는 조목은 3가지로 규제되었다. 이러한 추천조목은 《증보문헌비고》(선거고) 천용조에 기재된것들이다.

이처럼 때에 따라서 천거조목이 각이하였다. 그러나 모든 조목은 해당 시기 봉건통치에 이바지할수 있는 《인재》를 뽑자는 목적에서 출발한것들이였다.

추천계기도 일정하지 않았다. 해마다 정초에 추천하는것이 일반적이였으나 6월과 12월 정기적인 관리조동이 있기 전에 미리 조정의 2품이상 되는 관리로서 각각 2, 3명을 추천하게 하기도 하였다.(《증보문헌비고》권199 (선거고) 16 천용 2)

추천인원도 때에 따라서 1명씩 또는 2명~3명씩 정하였다.

처벌규정도 정해졌는데 추천된자가 뢰물을 받거나 륜리를 어기였을 때 처벌하였다.

《대체로 천거된 사람이 취재시험에 합격되였거나 6품이상의 정직을 지낸 사람외에는 4서가운데서 한가지, 3경가운데서 한가지를 자원에 따라 시험보여가지고 뽑는다.》(《증보문헌비고》권198 (선거고) 15 천용 1)

여기서 시험이라는것은 과거시험과는 다른것이였다. 대체로 만나서 서로 주고받는 말로써 론의심사할뿐이였다. 이때에는 그 등용대상의 인격과 품행, 학식과 능력 등을 대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한것이였다고 할수 있다.

실제적인 등용방법을 보면 추천된자들을 의정부에서 토의결정하여 선발등용하게 하였

는데 정부의 대신들과 6조판서들이 권점하기도 하였고 왕이 직접 일정한 벼슬자리에 등용하기도 하였으며 리조와 병조에서 자리가 나는데 따라 등용하기도 하였다.

지방에서의 《인재》추천등용에 대하여 효종 원년(1649)에 비변사에서 제의를 올리였는데 그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각 고을원들에게 지시하여 지경안의 재주와 덕행이 있는자들을 선발하게 하되 조정의 관리나 유생들을 물론하고 감사에게 추천하면 감사는 적합한가 적합치 못한가를 알아보고 리조에 올려보낼것입니다. 리조에서는 〈신언서판〉(용모풍채와 말주변, 글씨, 판단력)의 방법으로 시험해보고 정부에 올려보낼것이며 정부에서는 재능이 남달리 뛰여난자들을 선발하여 임금의 비준을 받아 리조에 내려보낼것입니다. 리조에서는 빈자리가 나는데 따라 벼슬을 주되 재주와 행실이 특별히 뛰여난자들을 선발하여 참상관직을 줄것입니다. 무사로서병마절도사나 수군절도사, 변방장수로 될만 한자들을 문사들과 함께 모두 추천하여 병조로 하여금 무예를 시험쳐보게 하고 병조에서 재능에 따라 벼슬을 줄것입니다.》(《증보문헌비고》 권199 (선거고) 16 천용 2)

이것을 통하여 지방의 《인재》추천방식과 등용방법을 알수 있다.

그러나 그 어떤 방식과 등용방법이든 그것은 봉건통치배들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한것이였다.

《증보문헌비고》(선거고) 천용조의 자료는 우리 나라 봉건사회의 관리등용실태를 리해하는데 적지 않은 자료를 제공해주고있다. 말로는 실지《인재》를 추천등용한다고 하였지만 그것은 봉건지배층안에서의 《인재》에 불과하였다.

우리는 앞으로 봉건사회에서의 관리선발제도를 비롯하여 해당 력사적면모를 과학적으로 밝힘으로써 우리 민족의 력사를 더욱 체계화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